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30일
-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건축법이 개정되어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 범위에 대하여 종전에 시·군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침수위 이하 부분을 거실 용도로 건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제29조)
- 재해관리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로 건축토록 함(제30조)

-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이 재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,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제31조)
- 재해관리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, 용적율 및 높이제한 규정을 100분의 13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제32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건축법이 개정되어
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
건축제한 및 건축기준의 완화 범위에 대하여
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그 주요내용은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과 구조를
제한하고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와
건축기준의 완화 등
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